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. 7. 8 선고 2019가단8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유한회사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일

변론 종결 2020. 5. 27

판결 선고 2020. 7. 8

주 문

1.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31,280,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25.부터 2019.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 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C가,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,280,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다툼 없는 사실

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2,008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공사대금채권'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었다.

피고 유한회사 C의 채권자들인 E, F, G, H는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,채권가압류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 이후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고,결국위 가압류채권자 E, F, G, H는 추심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추심금 31,280,118원을 지급하였다.

2.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채권가압류 집행 후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,그후 가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,이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구할 수 있다.

나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 유한회 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,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추심금 31,280,118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,피고 유한회사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31,280,118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, 원고는 31,280,118원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.

다. 따라서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1,280,118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

지급명령정보 송달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9. 4. 25.부터 2019.5. 31.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의,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라.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 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유한회사 C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주장하나,설령 원고가 공사대금을 이중지급한 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피고유한회사 C의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피고 유한회사 C가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,피고 유한회사 C로서는 원고의 과실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3.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원고의 유한회사*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신성훈